

## 1.6 책임구조기술자

### 1.6.1 내진성능평가의 책임구조기술자

- (1) 내진성능평가는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구조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한다.
- (2) 다만, 비선형해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.

### 1.6.2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

- (1) 내진보강설계 업무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기준 1.7에 따른다.
- (2) 내진보강설계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, 기술적 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 있다.
- (3) 특수공법,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법을 적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 있다.

#### [해설]

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공학과 내진설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,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설계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, 법적,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격자에 한한다.

## 1.7 제3자 검토

### 1.7.1 제3자 검토자의 정의

제3자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한 설계 결과에 대하여 오류와 미흡한 점을 바로 잡고, 경제성과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### 1.7.2 적용범위

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결과에 대한 제3자 검토가 요구된다.

- (1) 내진보강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비선형해석을 수행하는 경우
- (2) 감쇠장치와 면진장치 등의 특수공법 또는 신재료를 사용하는 경우
- (3)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 또는 보강설계 결과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요청한 경우

#### [해설]

(2)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공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「건축구조기준」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와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하기 어렵거나 동기준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법을 가리킨다. 신재료를 사용하는 공법, 감쇠장치와 면진장치, 신구조 및 구조 사이에 특수한 접합방법이나 부분접합을 사용하는 공법을 포함한다.

### 1.7.3 전문가의 구성

- (1) 기준 1장에서는 최소 2인의 전문가로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(2)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- 내진성능평가와 보강 실적이 있는 건축구조기술사 1인
  - 내진공학전공 연구자(학계) 1인
  - 비선형동적해석을 수행하는 경우 지반-구조 전문가 1인
- (3)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설계, 내진성능평가, 내진보강설계에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, 동역학, 비선형해석에 기본지식을 가져야 한다.
- (4) 내진공학전공 연구자는 내진공학분야, 비선형해석분야 등의 연구실적과 평가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이어야 한다.
- (5) 지반-구조 전문가는 지반의 재료특성과 동적특성, 구조물의 동적특성, 지반과 구조물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, 지반이력을 선정하고, 관련 기준에 맞게 보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.

### 1.7.4 검토 항목

- (1) 제3자 검토에서는 매뉴얼 14.2와 15.2, 15.3의 항목의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.
- (2) 발주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과 품질확인을 수행할 수 있다.